

대구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가단1379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2. 5. 27.

판결 선고2022. 6. 10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, 2,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. 11. 22. 접수 제1617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2013. 11. 22. D에게 별지 목록 1, 2,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,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준 사실,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D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은 사실, D는 2015. 10. 25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은 D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**2. 결론**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전명환**

별지